

과업내용서

『 하수도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

2015. 03.

성동구청

[안전치수과]

『 하수도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

I 공통사항

1. 용역명 : 2015년 하수도 준설토 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 하수도 준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에 목적이 있음.

3. 용역기간

- 계약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성동구 여건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리

- 관내 하수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5. 폐기물처리의 범위

- 1) 성동구 관내 준설폐기물 처리용역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준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6. 처리방법

- 1)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 처리하되 “갑”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작업지시일(올바로시스템 등에 의함)로부터 4일 이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2)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계근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근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 계근대 :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송정동78-1)

3)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반드시 “갑”의 작업지시에 의거 반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1)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자가 필요시 야간작업을 실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은 계상하지 않는다.

2) 준설펀기물의 처리

- “을”은 수분이 다량인 준설펀기물에 대하여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 “을”은 운반차량이 준설펀 및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토사의 유출, 비산,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밀폐형 차량을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 적치된 준설펀기물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운반 처리하여 악취발생 예방과 우기 시 유실을 방지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준설펀 이외의 것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감독관의 확인(입회)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준설펀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준설펀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준설펀기물 운반·처리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5)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을”은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준설펀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을”은 준설펀기물이 적치된 중간집하장에 대하여 준설펀 반출시 까지 청소 등 관리에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8. 설계변경 조건

- 1)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2)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 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이하로 한다.
- 3) 입찰결과 운반거리 55km미만의 업체가 수급자로 선정시는 실거리 정산하고 그 이상의 거리에 소재한 업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55km를 반영하여도 수급자인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대금지급 방법

- 1) “을”은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주관과장 작업지시에 의해 처리 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한다.
- 2) “갑”은 “을”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 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10. 처리결과 보고

- 1) “을”은 운반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한 자료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을”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 인계 번호, 일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3) “을”은 2)항에 의거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을 따르며, 폐기물 운반하는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감독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1. 기 타

-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2) 과업지시서상에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12. 관리의 위임

- 1)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을”은 계약내용을 “갑”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하여야 한다.

13. 면 책

-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폐기물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14. 하도급 제한

-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15. 통보사항

- “을”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해 약

- 1) “갑”과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갑”과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 2) “을”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 3)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작업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갑”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작업지시 불이행 물량에 대한 운반·처리금액의 10%를 감액하는 “갑”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위 3)항에서 “갑”의 작업지시를 “을”이 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시 1회에 한하여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시 3)항의 조치에 따른다.

Ⅱ. 준설토 운반 및 처리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1) 도급자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작업시 중간집하장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 후 운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도급자는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4)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 시킬 수 있다.
- 5)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 한다.
- 6)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상차 및 운반작업

1)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자가 필요시 야간,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은 계상하지 않는다.

2) 준설토사의 처리

가. “을”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다. 적치된 준설토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운반·처리하여 악취발생 예방과 우기시 유실을 방지한다.

라. 수집·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3) 토사의 처분

가.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우리구 준설토 중간집하장(독섬 빗물펌프장 부지 내 등)에서 재활용 업체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중간집하장에서 운반시는 주변 정리를 하여 중간집하장 구역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준설토의 재활용업체에 운반시 우리구의 반출 승인에 따라 반출하고 계량증명원을 받아 정산 처리한다.

라. 준설토를 무단으로 불법 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물량 정산

가. 운반 물량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또는 공인계근소 등에서 발행하는 계근표를 대조하여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나, 함수비 측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함수비 측정을 원칙으로 정산 처리한다.

※ 공인 계근대 :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송정동78-1)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의하지 않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운반처리 물량에서 제외 한다.

다. 운반비는 운반거리가 변동되어도 계약단가(처리비)는 변경할 수 없다.

라. 모든 작업은 우리구 감독자(또는 위임받은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차 및 운반을 할 수 없다.

3. 재활용 업체의 처리

1) 처리방법

가. 도급자는 준설토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나. 처리업체는 허가된 계근기로 계측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계근표는 작업을 완료한 후 즉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